#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21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조계원·김재원·박수현

양문석 • 박지원 • 이학영

민형배 • 주철현 • 윤준병

김윤덕 · 김문수 · 민병덕

이광희 • 이기헌 • 양부남

김현정 · 임오경 · 김우영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 법령에 따르면 숙박업소에는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위반 사항이 적발된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견되어도 등록 취소나 해당 시설의 폐쇄 등의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의 안전한 이

용을 통하여 관광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제35조 및 제78조). 법률 제 호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제3절에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1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관 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제20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 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 사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신 설>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관광 도 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 업용 시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 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 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 ·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9의2. (생 략) <u><신 설></u>

10. ~ 20. (생 략) ② ~ ⑦ (생 략) 제78조(보고·검사) ①·② (생 략)

<u><신 설></u>

③ (생략)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

\_\_\_\_\_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카 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10. ~ 20.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8조(보고·검사)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제20 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

-----

-----

여야 한다.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